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520 호

1975 .9. 12.

#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507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천광고업무 취급규칙중 개정규칙 ..... 3
제 1508 호 :	서울특별시 서경세신추진위원회 규칙 ..... 3
제 1509 호 :	서울특별시 소방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 4
◎ 고 시	
제 144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및지적승인 ..... 18
제 145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 18
◎ 공 고	
제 214 호 :	영동제 2 지구 1 공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계획변경공람 공고 ..... 19
제 215 호 :	환지 예정지 일부변경지정공고 ..... 19
제 217 호 :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계획공람 ..... 20
제 219 호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 ..... 21
◎ 사 령	.....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광고업무취급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9. 12

○ 서울특별시규칙제 1507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광고업무  
취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 광고업무 취급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 조 제 2 항 중 제 2 호를 삭제하고  
제 3 호를 제 2 호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정채신추진위원회 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9. 12

○ 서울특별시규칙제 1508 호

서울특별시서정채신추진위원회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민업무  
민폐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코자 서울특별시  
서정채신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어 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민관체 대책업무 발굴 및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민관체 대상업무의 시정 개선에  
관한사항
3. 완료사적 사무관리에 관한사항
4. 민관체 대상업무의 분석평가에  
관한사항
5. 기타 서정채신에 관한 중요사항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제 1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은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  
건사회국장, 산업국장, 도시계획국  
장, 관광운수국장, 건설국장, 감사  
관, 종로구청장, 관악구청장이  
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회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심의 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확정할 수 있다.

②심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6 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감사제 4.계장이 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서정해신주진위원회 규정인 규칙 제 1318 호 (73.7.10)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509 호

서울특별시 소방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 제 22 조 및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 주입과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여 처분의 신속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행정처분)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행정명령 : 소방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이행명령 또는 경고로서 법규에 의한 의무를 준수토록 촉구하는 일차적 조치를 말하며 소정기간내에 이행 또는 의무를 계속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정지 또는 취소처분으로

대처할 뜻을 표시한다.

2. 정지처분

가. 면허의 효력정지 : 소방법규에 위반한 위험물 취급주입에 대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동안 정지시켜 위험물 취급업무를 금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나. 위험물 사용정지 : 소방법규에 위반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위험물의 제조저장, 취급 기타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3. 취소 : 해당 위반사항이 있을 때 소방법 제 15 조, 제 19 조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 3 조 (위반사항적발) 관계공무원은 위험물 취급주입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해당 소방법규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 1 호서식에 의거 소방서장 (이하 "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반자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행정처분의 결정) ①서장은 건조의 적발보고서등을 검토하여 별지제 2 호서식에 의하여 적발보고

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상신하여야 한다.

②행정처분의 결정은 별표 1의 위반사항별, 처분내용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소방본부 및 소방서 위임권결구정에 의하여 건전처리한다. 단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시장이 이를 결정 집행한다.

제 5 조 (행정처분의 집행) ①행정명령은 별지제 3 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정지처분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험물취급주입 : 서장은 정지처분의 결정이 있을때 별지제 4 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위반자에게 발부하고, 면허증은 말부하여야 한다.

2. 위험물제조소등 : 서장은 정지처분의 결정이 있을때 별지제 5 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위반업소에 발부하고, 위반업소의 설치허가증, 수압검사필증, 완공검사필증 (이하 "설치허가증" 이라 한다)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조소등의 시설에 대하여 봉인 조치하고, 동 기간동안 해당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③취소처분의 집행은 시장이 별지제 6 호서식에 의하여 취소처분을 통고하고 면허증 또는 설치허가증

<p>을 회수하여야 한다.</p> <p>④회수된 면허증 또는 설치허가증은 처분기간 동안(취소처분인 경우는 취소이후) 본부장이 보관하며, 면허(허가)대장과 면허증에 위반 사항등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 10 매미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회수된 설치허가증은 시장이 보관하고 대장등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제 6 조 ( 허가취소후조치 )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위험물 및 용기 ( 탱크 등 ) 를 제거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행하여 제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별표 1 >

가. 위험물 취급주입 행정처분 기준

항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비 고
		1 회	2 회	3 회	
1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위험물 취급주입으로 부적당한 자	면허취소			외로기관집단에 포함
	2. 편안 실명으로 양안의 조정시력 0.1이하	•			
	3. 양안의 조정시력 0.1이하	•			
	4. 양상지의 완판절. 이상이 함께 결단	•			
	5. 양하지의 족 이상이 함께 결단	•			
	6. 색 맹	•			
	7. 청각능력이 50 데시벨이상	•			
	8. 신체에 대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급능력을 잃은 자	•			
	9. 정신질환, 간질, 병어리, 마약 및 알콜중독자	•			
2	암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간중 효력정지			

항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비 고
		1 회	2 회	3 회	
3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면허취소			
4	위험물취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면허취소			
	2.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가. 재산피해액 10만원미만 또는 인명피해 부상 3명 미만	경고	경고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① 위반사항이 가까에 해당될 경우 : 효력정지 6월 ② 위반사항이 아나에 해당될 경우 : 효력정지 1년 ③ 위반사항이 다아에 해당될 경우 : 면허취소	정지처분종료후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가, 나 또는 다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취소	부상이라 함은 10일 이상의 안정기간을 요하는 정도를 말함
	나. 재산피해액 10만원이상, 부상 3명이상 또는 사망 1명 이상	효력정지 6월	정지처분종료후 2년 이내에 ① 위반사항이 가 또는 아에 해당될 경우 : 효력정지 1년 ② 위반사항이 다에 해당될 경우 : 면허취소	정지처분종료후 3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가, 나 또는 다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취소	
	다. 재산피해액 100만원이상, 부상 5명이상 또는 사망 2명이상	효력정지 1년	정지처분종료후 3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가, 나 또는 다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취소		
	라. 재산피해액 500만원이상, 부상 10명이상 또는 사망 5명이상	면허취소			
5	자격수첩(면허증)의 타인에게 대여	효력정지 6월	정지처분종료후 3년 이내 동일한 사항위반시 면허취소		
6	정지처분명령을 받고 불응할 때	면허취소			

나. 위험물 제조소 등 행정처분 기준					
항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비 고
		1 회	2 회	3 회	
1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행정명령	사용정지 (시정완료 시까지)	허가 취소	다만, 정지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정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2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때	사용정지 15일	허가취소		
3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완공검사합격시까지)			다만, 정지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완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취소
4	제조소 등의 허가된 수량 이상 또는 허가품목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였을 경우				
	1.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할 때	사용정지 10일	허가취소		
	2. 일반취일 때	행정명령	사용정지 10일		
5	위험물 취급주입 미실입	행정명령	사용정지 5일		
6	법제 26 조 제 26 항의 규정에 의한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 명령위반	경 고	사용정지 (시정완료시까지)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시정 명령 위반	사용정지 (시정완료시까지)	허가취소		
7	허가조건 위반				
	1. 위해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행정명령	허가취소		
	2. 설치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사용정지 (시정완료시까지)		
	3. 설치장소가 도시계획에 저촉될 때		허가취소		
8	정지처분 명령을 받고 불응한 때	허가취소			





<별지 제 1호서식>			
소 방 법 규 위 반 사 항 적 발 보 고 서			
위반지	주 소		
	성 명		전화증번호
위반도착점	주 소	설 치 위 가 년 월 일	
	업소명	설 치 자 (대표자) 명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첨 부			
<p>상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됨기 서울특별시 소방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적발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    시    분</p> <p>○ ○    소 방 서    계 답    성 명    ㉞</p> <p>○ ○    소 방 서 장    귀 하</p>			

<별지 제 2-1 호서식>

○ ○ 소 방 서

방 호 2052- 19 . . .

수 신 서울특별시

참 조 소방본부장

제 목 위험물 취급주입 행정처분 상신

아래와 같이 위험물 취급주입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본 격					
	주 소					
	적.성명					
반	면허증	종 류	류 별	번 호	교부년월일	교 부 자
자	신입년월일	소재지				
	업소명					
처분요구		적용법규				
위반내용						
○ ○ 소 방 서 장						

<별지제 2 - 2 호서식>

○ ○ 소 방 서

방 호 2052- 년 월 일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소방본부장

제 목 위험물 행정처분상선

아래와 같이 위험물 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반 업 소	위 치				
	업 소 명				
	설 치 자				
	허가사항	허가년월일	품명 및 수량	설치목적	기 타

처 분 요 구 처 용 범 규

위 반 내 용

○ ○ 소 방 서 장

<별지 제 3 호서식>

○ ○ 소 방 서

방 호 2052-

197 . . .

수 신

제 목 행정명령 (경고)

아래의 위험물

는(은)소방법 제

조 제

항

에 위반하였으므로 소방법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

(경고) 함.

본 명령 (경고)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한 조치를 취

하게 됩니다.

다

음

명령 (경고) 사항 :

○ ○ 소 방 서 장

<별지제 4 호서식>

서울특별시

방 호 2052-

197 . . . .

수 신

제 목 위험물 취급주입 면허 효력정지처분

귀하는 소방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소방법  
제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험물 취급주입 면허의 효력을 정지함.

- 1. 면허사함
- 2. 위반내용
- 3. 효력정지기간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 5 호서식>

서울특별시

방 호 2052-

197 . . .

수 신

제 목 위원장

사용정지처분

위 위원장은 소방법제 조제 항에 위반되어  
소방법 제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원장 사용정지를 명함.

- 1. 허가사항
- 2. 위반내용
- 3. 사용정지기간

서울특별시

<별지 제 6 - 1 호 서식>

서울특별시

방 호 2052-

197 . . . \*

수 신

계 목 위험물 취급주입 면허취소

귀하는 소방법 제 조 제 람을 위반하여 소방법 제 조  
에 의하여 위험물 취급주입 면허를 취소하니 수명 즉시 면허증을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

- 1. 면허 사항
- 2. 취소년월일
- 3. 면허증 반납장소

서울특별시장

<별지제 6-2호서식>

시 율 목 별 시

방 호 2052-

197 . . .

수 신

제 목 위업불 허가취소

귀 위업불 는 소방법 제 조 제 람을 위반하여  
소방법 제 조에 의하여 위업불 허가를 취소하니 수명주식  
허가증(수압 및 완공검사필증포함)을 반납하고 위업불 및 용기를 제거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업불 및 용기를 제거하지 않을때에는 소방법 제77조제5호에  
의한 의법조치와 동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 1. 허가사함
- 2. 취소년월일
- 3. 허가증 반납장소

시 율 목 별 시 장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44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34 호( 73.11.5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출장소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9.13

서울특별시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정구장	성동구암구정동 356-2 의 2 필지	2,993 ㎡	

◎서울특별시고시제 145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

1. 당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시설결정조서>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9.16.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 시내버스 )	도곡동 125-16	1,643 ㎡ ( 498.1 평 )	영등교동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및 영등출장소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14 호

영동제 2지구 1공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 당시가 시행중에 있는 영동 ( 2 지구 1 공구 )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동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판제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하겠으나,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5. 9. 12

서울특별시장

- 환지계획변경내역 -

- 가. 사업지구명 :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 2 지구 1 공구 )
- 나. 변경 위치 : 청담동 167-1 의 12 필. ( 24, 25, 41, 145, 146, 147, 구획 ).
- 다. 공 랑 기 간 : 75.9.12 - 75.9.25 ( 14 일간 )

○ 서울특별시공고제 215 호

환지역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1. 영동 제 1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환지 예정지중 일부토지를 다목적 주차장 용지로 확보키 위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제 47 조 제 55 조의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제 56 조와 서울특별시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지정 하였기 공고 합니다.
2. 환지 예정지 변경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영동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 합니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는 별도 서류를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첨부: 환지 예정지 변경조서 및  
도면 (생략)

1975.9.12

서울특별시

- 환지계획일부변경지정내역 -

가. 사업명: 영동(1지구)토지구획  
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76,950.4 평

다. 변경위치: 성동구 반포동 225  
의 1호의 156 필지

◎ 서울특별시공고제 217 호

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  
사업계획공람

1. 건설부고시 제 294호(74.8.30)  
로 사업실시 인가된 한남 제1구역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86조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47조 및  
제 33조 규정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관계도서는 주택국 개량 2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하고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5.9.16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가. 사업명: 한남제1재개발 촉진지구

나. 시행위치: 한남동 726번지일대

다. 시행면적: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39조에 의한 행위허가지역

시행총면적	택지면적	도로면적	층진필수	비고
4,508평	3,180평	L 328평	25필지	

라. 시행방법

① 토지소유자간에 합의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로서  
기 시공된 택지내에 합필 환지임

② 합필환지 지정으로 인한 소유자별  
분리는 추후 환지 지정지변경  
(분합)으로 처리 위계임. 끝.



<p>박재홍 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습 행정 관에 보함.</p> <p>김동훈 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습 행정 관에 보함.</p> <p>박혁진 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습 행정 관에 보함.</p> <p>김영욱 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습 행정 관에 보함.</p> <p>김성수</p> <p>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습 행정 관에 보함.</p> <p>기영서</p> <p>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중구 수습 행정 관에 보함.</p> <p>서정호</p> <p>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습 행정 관에 보함.</p>
---	---

© 1975.9.15

성명	제			청		현 지 급
	부	서	호봉	지	급	
박지균	종	로	1호	별정직 3	상당	중령
김만선	중	구	"	"	"	"
정새창	동	대	"	"	"	소령
신봉선	성	동	"	"	"	중령
김문덕	성	북	"	"	"	대위
허병문	도	봉	"	"	"	준위

성 명	책			참	원 지 급	
	부	서	호			직
김용재	시	대	문	1 호	별정직 3 을 상당	소
김기영	마	포	산	"	"	중
이진화	용	동	포	"	"	대
황용근	영	동	포	"	"	소
이태순	관	악	산	"	"	대

  

<p>아 동 과 지방행정 김진순 사무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성 동 구 지방행정 유승용 서 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 이용준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채에 처함.</p> <p>도 봉 구 지방행정 유은식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동대문구 지방행정 이종우 주 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성북구보거소 지방행정 왕학돈 서 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채 에 처함.</p> <p>시 민 과 지방행정 김정자 서 기 보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감명옥</p> <p>지방간호 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김명현</p> <p>지방간호 지원보시보에 임함.</p>
---	--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이 순  
 지방간호 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민재식  
 지방간호 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조연숙  
 지방간호 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박윤숙  
 지방간호 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 병원 근무를 명함. 강영호  
 감사담당관 지방행정 주사  
 순찰담당관 순찰3계장 직무  
 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오금석  
 공무원교육원 교학과 지도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문 교 부 농 림 원중식  
 (산업대학) 기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 기사에 입함.  
 5호봉을 급함.  
 산업대학 근무를 명함.  
 문 교 부 농 림 장찬규  
 (산업대학) 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 기사보에 입함.  
 5호봉을 급함.  
 산업대학 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건축 남종송  
 기원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전격  
 에 치함.  
 © 1975.9.16  
 농 정 과 지방행정 김문식  
 주 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7.1 (발령제 413호) 정제  
 처분 (감봉 3월)을 동일자로  
 취소함.

서울특별시장